



2019 김포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목차

I

자금 지원

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04
②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06
③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08
④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0
⑤ 김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12

II

기술 지원

⑥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13
⑦ 디자인개발 지원	15
⑧ 기술닥터 지원	16
⑨ 기술맞춤형 지역사업단 운영지원	18
⑩ 지식재산창출 지원	19
⑪ 비즈네비 사업	20
⑫ 뿌리산업 육성 지원사업	21
⑬ 기업 맞춤형 환경애로 지원사업	22

III

창업 지원

⑭ 경기(김포)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23
⑮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24

IV

마케팅 지원

⑯ 해외시장개척 지원	25
⑰ G-FAIR KOREA 단체관 운영	26
⑱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27

V

기업SOS 지원

⑲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8
⑳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	30
㉑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31
㉒ 기업SOS 희망버스 운영	32
㉓ 김포시 공산품 전시장 운영	33
㉔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34

VI

일자리 지원

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35
㉖ 김포청년 채용 디딤돌 사업	36
㉗ 김포일자리센터 운영	37
㉘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지원서비스	38
㉙ 김포청년 내일 옷장(면접 정장 무료대여 사업)	40

VII

중앙부처 관련 사업

⑳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41
㉑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	44

VIII


기타 지원

㉒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	48
㉓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49
㉔ 온라인 기업지원 안내	50
㉕ 기업지원 유관기관(관련) 사이트	50
㉖ 공장설립 개요	51
㉗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신청 안내	54
㉘ 공장건축 총 허용량 제도 안내	56
㉙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57



I 자금 지원

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¹⁾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개요

- 용자총액 : 400억원(분기별 접수)
- 용자금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기업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상이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2.0% 이자차액 보전
 - ※ 추가(0.5%)지원 : 김포시중소기업대상, 여성·장애인기업, 본사 관내이전 기업(1회에 한함)
고용중대기업(전년동일분기 대비 10%이상 고용중대기업)
- 용자기간 : 1년 ~ 3년(업체별 선택)
- 대출은행 : 관내 7개 협약은행
 - ▶ 관내 6개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 ▶ 관외 1개 은행 : 한국씨티은행 일산 중앙지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김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 하는 기업체
 - ※ 신청일 현재 김포시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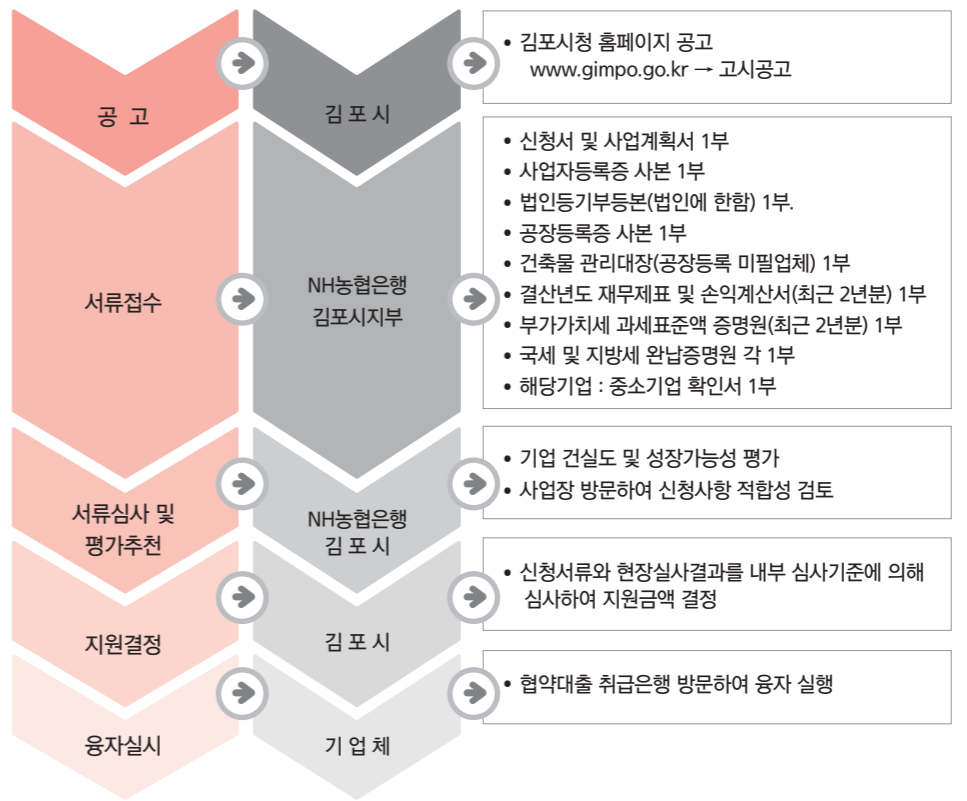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

1) 운전자금 :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제외대상

- 창업한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1년 미만의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대출 운전자금 상환일로부터 만 1년 미만의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자금 지원 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은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중인 기업,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기업

지원절차



문의처

- 김포시 기업지원과 : ☎ 031-980-2283
-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 : ☎ 031-980-0541

2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자금력이 부족한 김포시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개요

- 용자총액 : 40억원(자금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용자금액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업체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상이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2.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용자기간 : 1년 ~ 4년(단기 및 분할 상환)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으로 관련 인·허가 등을 필하고, 신청일 현재 김포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시장이 정한 업종의 사업자

소상공인 정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같은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그 밖의 업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 ※ 제조업 :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사업자
 - ※ 비제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1. 제조업 : 120억원 이하
 2. 건설업/운수업/인쇄업 등 : 80억원 이하
 3. 도매 및 소매업/정보통신업 등 : 50억원 이하
 4. 부동산업/스포츠서비스업/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 등 : 30억원 이하
 5. 산업기계장비수리업/교육서비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0억원 이하



제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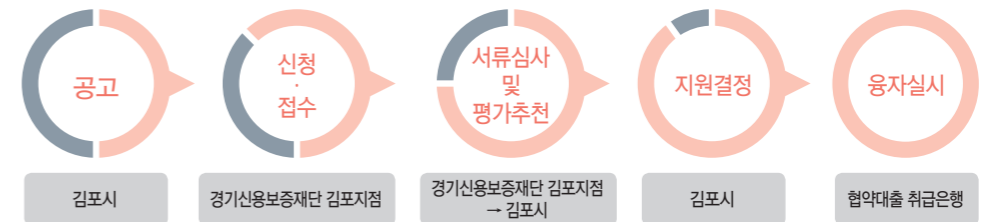
-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미만의 업체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대출 운전자금 상환일로부터 만 6월 미만의 업체
- 최근 3년 이내 시 운전자금 용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원받은 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업체
- 시장이 정한 지원제외업종인 업체



▶ 시장이 정한 지원제외업종인 업체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일반유희 주점업
56212	무도유희 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캐블링 및 베틀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증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증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단, 주류증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지정서 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 중	총포 도매업
47599 중	총포 소매업
4792	노점 및 유사 이동판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증개업(66202)은 제외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단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단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 보건·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 회장이 지정한 업종

지원절차



문의처

-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 ☎ 031-980-2563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 ☎ 031-997-1278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하여 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2. ~ 자금 소진 시
- 사업내용

구 분	중소기업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경기도 및 김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결정 업체 중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지원을 받기 어려운 업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김포시로 되어있고 지방세 등 체납사실이 없는 업력 3개월 이상 자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지원절차



문의처

- 김포시 기업지원과(중소기업) : ☎ 031-980-2283
- 김포시 일자리경제과(소상공인) : ☎ 031-980-2563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 ☎ 031-997-1278

4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자금부족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 경제활동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경기도 내 중소기업

< 지원 제외기업 >

- ▣ 휴·폐업 중인 기업
-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 침해가 있는 기업
-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을 받은 기업 등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의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용자금액

- 운전자금 : 5억 원 이내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30억 원 이내

○ 대출기간 및 금리

구분	대출기간	대출금리	비고
운전자금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기금융자 : 별도 고지 금리 • 협조용자 : 은행금리-이차보전율	※ 추가 금리지원 신기술, 벤처창업기업 : 0.5% 여성, 장애인기업 등 : 0.3%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 기금융자 :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용자 지원, 대출금리의 일부를 할인
- ※ 협조용자 : 일반은행자금을 재원으로 용자 지원, 대출금리의 일부를 이차 보전

지원절차



문의처

- 김포시 기업지원과 : ☎ 031-980-2283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 ☎ 031-997-1278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 세부지원계획

구분	지원규모	자금용도	지원내용	지원한도	상환기간
합계	18,000				
소계	8,000	운전자금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5,5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 구입비,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 창업자금 등	소요금액 범위이내	5억원	3년 (1년거치)
청년혁신창업	400			4억원	5년 (2년거치)
소상공인	1,500	경영개선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1억원	4년 (1년거치)
		창업자금			
		재창업자금	5천만원		
		점포임차자금	소요금액 90%이내		
사회적경제기업	100	운전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2억원	
특별경영자금	500	- 희망특례 50억원, 재해피해 50억원 - 긴급경영자금 400억원(상황 발생시 세부 지원대상 추가)			
소계	10,000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10,000	연구개발비	소요금액 범위이내	5억원	3년 (1년거치)
		공장임차비	임차비의 80%이내		
		건축비 (기숙사, 복지시설)	소요금액 80%이내	3억원	
		복지시설매입, 기숙사 매입, 임차비	소요금액 80%이내	2억원	
		시설설비구입비 (일반서비스기업)	소요자금 범위이내	2억원	
		시설설비구입비 (부대비용)	소요자금 범위이내	30억원	
		건축비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건축비의 80%이내	30억원	
		매입비 (공장, 창고, 산단부지)	매입비의 80%이내	30억원	
		지식산업센터 등 입주비용(분양, 매입)	소요자금 80%이내	15억원	
		사업장건축비 (일반서비스기업)	건축비의 80%이내	10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소요금액 범위이내	3억 ~30억원	
지식산업센터 벤처집적시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의 75%이내	300억원	8년 (3년거치)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건립비의 50%이내	150억원	

5 김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목적

- 목 적
 - ▶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다수 기관에 산재하여 운영되고 있는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한 자리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공
- 운 영 : 상시 (09:00 ~ 18:00, 월 ~ 금)
- 참여기관별 수행업무

기관명	수행업무	비고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운영자금 등 대출상담 및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출한도</th> <th>대출기간</th> <th>약정이율(연)</th> </tr> </thead> <tbody> <tr> <td>창업 입차보증금</td> <td>2천만원</td> <td rowspan="4">1~5년</td> <td rowspan="4">3.5%~4.5% (대출초기 4개월 4.5%적용 후 성실 상환 시 3.5% 금리적용)</td> </tr> <tr> <td>생계형 차량구입 (1톤이하 화물, 개인택시)</td> <td>2천만원</td> </tr> <tr> <td>운영자금(개인택시)</td> <td>2천만원</td> </tr> <tr> <td>시설개선자금</td> <td>2천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대출한도	대출기간	약정이율(연)	창업 입차보증금	2천만원	1~5년	3.5%~4.5% (대출초기 4개월 4.5%적용 후 성실 상환 시 3.5% 금리적용)	생계형 차량구입 (1톤이하 화물, 개인택시)	2천만원	운영자금(개인택시)	2천만원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구분	대출한도	대출기간	약정이율(연)												
	창업 입차보증금	2천만원	1~5년	3.5%~4.5% (대출초기 4개월 4.5%적용 후 성실 상환 시 3.5% 금리적용)												
	생계형 차량구입 (1톤이하 화물, 개인택시)	2천만원														
	운영자금(개인택시)	2천만원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신용회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조정, 공적채무조정 연계, 신용교육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꿔드림론, 소액대출 상담 및 지원 등 															
현장대출 지원 (저축은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햇살론 및 사업자 햇살론 상담 및 지원 등 	필요시														

문의처

- 위 치 :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
- 문 의 : 김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031-986-8768

II 기술 지원

6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舊 패밀리기업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생산-마케팅'으로 연계되는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강소기업 육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 ~ 12.
- 신청대상 : 김포시 소재 연매출 120억 원 이하 중소기업(지방세 완납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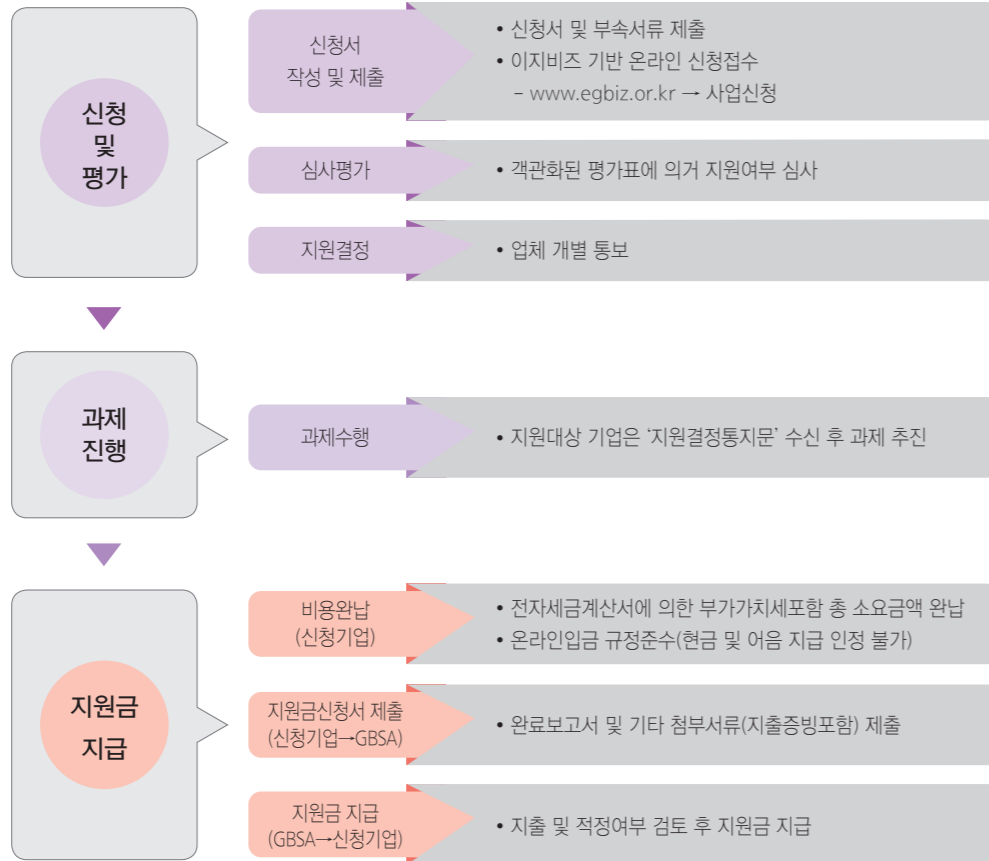
- 공장등록을 필(必)한 기업 또는 창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공장등록 예외)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

- 지원내용 :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

구분	단위사업	주요내용	최대지원한도	
			비율	금액
창안 개발	국내 지식재산권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국내특허 관납료,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등 출원 지원 ※디자인/상표 : 사후 신청	50%	특(건 1.3백) 실(건 0.9백) 디(건 0.35백) 상(건 0.25백)
	국내 규격인증	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 비용 등) ※시스템 인증 제외	50%	3백만원
	산업기술정보제공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아이템에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자료를 전세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조사한 후, 기업체에 제공	100%	1백만원
제품 생산	시제품개발 (금형·워킹목업)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금형 및 워킹목업 제작비 지원	50%	금형 13백만원 목업 5백만원
	시험분석	국가공인 전문 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 ※ 사후 신청('19.1월~12월 완료된 시험분석)	50%	1.5백만원
판로 개척	홈페이지 제작	한글/외국어로 제작하는 기업의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 기업당 연간 1회(기존 홈페이지의 수선/유지보수 제외)	50%	1백만원
	전시박람회	국내개최 공식 전시·박람회 참가시 소요비용을 지원 ※ 연간 1회(부스임차료, 기본장치비)	50%	3백만원
	국내홍보 판로	국내발행 전문잡지광고, 기업 및 제품 홍보동영상, 온라인마켓 플레이스 제품등록 비용	50%	3백만원 (종별상이)
	카탈로그 제작	수출 및 해외전시회참가를 위해 외국어(국문)으로 제작하는 제품카탈로그, 리플렛 제작	50%	1.5백만원

- ▶ 업체당 연간 20백만원 한도, 단위사업별 복수 선택 지원

지원절차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지원센터 : ☎ 070-7116-4814
- ※ 기업지원정보포털 : www.egbiz.or.kr

7 디자인개발 지원

제품 및 시각 분야 등의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제품 개발촉진 및 제품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 ~ 12.
- 신청대상 : 김포시 소재 공장등록 필한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디자인 진단에서 상용화까지 체계적 지원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한도액	기업 부담
디자인 닥터	• 해당분야 전문 디자인닥터가 1:1 디자인 사전 애로 진단	15만원 이내	없음
디자인 컨설팅	• 15회 이내 현장 컨설팅 지원으로 디자인 애로 해결 및 개발방향제시	210만원 이내	40%
디자인 개발	• 디자인 전문 인력을 활용, 제품 및 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제품(1,400만원) 이내 시각/포장(700만원) 이내 통합(2,100만원) 이내	40%
디자인 상용화	• 우수과제 상용화를 위한 금형 및 포장재 제작 지원	금형 1,500만원 이내 포장 500만원 이내	50%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 ☎ 031-888-6836
- ※ 기업지원정보포털 : www.egbiz.or.kr

8 기술닥터 지원



산·학·연의 연구자원(인력·장비·기술·정보)을 활용한 기업 현장 애로기술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실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 ~ 12.
- 신청대상
 - ▶ 본사나 공장이 김포시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제외대상
 - ▶ 현장애로기술지원 : 휴·폐업 상태의 기업
 - ▶ 중기애로기술지원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기업
 - ▶ 상용화지원 : 상용화지원 지원금의 1/3이상 환수 기업
 - ▶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추천)인 자



지원내용

지원과제	지원 내용		세부내용	비고
현장애로 기술지원	지원인력의 10회 이내 현장방문으로 애로기술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 기업 당 300만원 이내 • 전문가 추천 후 기업이 기술닥터 선택, 14일 이내 방문, 50일 이내 해결 원칙 • 애로기술 원인분석, 솔루션 제공으로 제품 / 공정상 문제점 해결 • 필요(기업요청)시 다수 / 여러 분야의 기술닥터 연계가능 • 기업부담금 : 없음 	
중기애로 기술지원	4개월 현장 기술 지원 (기술, 인력, 장비 지원)	일반중기 애로기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 기업 당 2,000만원 이내 -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 기업에 지원 • 지원인력이 3개월 이상 기술애로를 해결하면서 시제품제작, 실험, 공정개선 등을 지원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30%(현금) 	
		고용연계 애로기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 기업 당 2,600만원 이내 - 선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에 지원 • 대학의 지도교수와 함께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졸업 또는 과정 중의 인력 및 퇴직기술전문가가 기업에 상주하면서 기술을 지원하여 (고급)기술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고용기회 부여 ※ 선정 심사 시 6개월이상의 고용유지확약 기업 가점부여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30%(현금) 	
상용화 지원	6개월이상 기술지원 (매출과 고용창출을 목표로 기술, 인력, 장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 기업 당 4,500만원 이내 - 전년도 중기애로기술지원 성공기업 중에서 선정 - 중기애로기술지원 과제를 수행한 기업의 신제품개발 지원 - 기업주도형으로 기술지원인력(기술닥터)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30%(현금) 	
전주기적 문제 해결지원	/시험분석 /설계 /시물레이션, /3D 프린팅 제조-ICT 융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 기업 당 500만원 이내 - 현장애로기술지원 진행 및 완료 기업에 지원 •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불량 원인분석 또는 시제품 검증을 위한 단계별 기업현황 맞춤형 지원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30%(현금) 	

문의처

-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 ☎ 031-500-3118
-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www.gtp.or.kr/>

9 기술 맞춤 지역사업단 운영지원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한계, 디자인 애로, 지적재산권 확보, 마케팅, R&D 교육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내·외부자원을 연계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 ~ 12.
- 신청대상 : 본사나 공장이 김포시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한도액	기업	비고
맞춤형 기업 현장 사업화 지원	• 디자인, 지재권, 마케팅 등 다양한 기업 운영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원	150만원	없음	
맞춤형 상용화 심층 지원	• 시제품제작 및 디자인 등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심층지원	600 ~ 1,200만원 차등 지원	30%	
R&D 지원(교육)	• 중소기업 R&D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 및 지원	900만원	30%	
중소기업 제품 개발 지원	• 중소기업의 기존 제품 혁신이나 신제품 개발 지원	2,000만원	30%	
경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연계	• 기술닥터사업, 지식재산권 사업, 정부사업 참여전략 컨설팅 추천	25개사 내외	없음	비예산

문의처

-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 : ☎ 02-3158-6538
-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www.gtp.or.kr/>

10 지식재산창출 지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 ~ 12.
- 신청대상
 - ▶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세금 체납액이 없는 기업
 - ▶ 동일 건과 관련하여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제외대상
 - ▶ 공고이후 신청일 이전 출원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 단, 공고일 이전(2019.1.1. ~ 공고일) 출원 완료 건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3D시뮬레이션 영상 제작	7,000천원 이내	
	특허맵	10,000천원 이내	
스마트 IP케어	디자인맵		
	디자인 개발	제품 디자인	13,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목업	7,000천원 이내
브랜드 개발	포장 디자인	13,000천원 이내	
	신규 브랜드	7,000천원 이내	
국내·외 IP컨설팅	국내·외 IP컨설팅	무료	

문의처

-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 ☎ 031-877-6931
- ※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http://www2.ripc.org/>

11 비즈네비 사업



김포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주력업종의 제(부)품 개발,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산업성장을 주도적으로 육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 ~ 12.
- 신청대상
 - ▶ 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 등록 기업
 - ▶ 산업분야 : 기계금속, 전기전자 분야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한도액	기업부담
비즈네비 사업	• 제(부)품 · 기술개발 · 공정개선 비용	• 최대 9,000천원	30%
사후관리	•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기타 진흥원 사업 연계 우선지원		없음

추진절차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지원센터 : ☎ 070-7116-4815
- ※ 기업지원정보포털 : www.egbiz.or.kr

12 뿌리산업 육성 지원사업(신규)



뿌리산업 신기술 개발 및 노후시설 개선, 환경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효율개선으로 뿌리기업 및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 ~ 12.
- 지원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김포시 소재 뿌리기업
 -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 부품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한도액	기업부담
R&D 개발지원	•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시제품(금형틀 등) 등 제작비 지원	20백만 원 이내	총 사업비 30% 이상
뿌리기술 인증 획득 지원	• 국내외 품질인증(현대/기아 SQ인증, IATF16949, ISO 45000) 획득을 위한 컨설팅, 인증 비용 지원	12백만 원 이내	
유해물질 대응 지원	• 장외영향평가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교육, 작성/대행 컨설팅	12백만 원 이내	
시험분석지원	• 뿌리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성능(성분) 시험 인증비용 지원	1백만 원 이내	
전시회 개최	• 국내외 부품소재 및 뿌리산업, 자동차 등 산업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연 2회 예정)	-	

문의처

-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 : ☎ 031-500-3007
- ※ 기업지원정보포털 : www.egbiz.or.kr

13 기업 맞춤형 환경애로 지원사업(신규)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맞춤형 환경애로 지원으로 지도·단속 대비 및 자율적인 환경개선 유도를 통한 지역 내 환경문제 해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 ~ 12.
- 신청대상 :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및 지방세 완납을 필한 기업체
 - ▶ 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기업 가능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지원한도(기업당)	비고
(1단계) 환경애로 현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전문가 방문 및 컨설팅(5회 방문 컨설팅) • 환경애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150만원 이내	기업부담 없음
(2단계) 환경애로 집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도 측정 등 분석 지원 • 환경개선 세부 실행계획 수립 지원 • 환경 배출 인허가 등 맞춤형 환경관리 매뉴얼 개발 	7백만 원 이내	기업부담 30%
(3단계) 환경오염물질 방지설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 및 저감시설 설치 지원 • 노후 저감시설 교체 및 개선(수리 등) 지원 • 제조 공정 상 발생하는 오염물질 방지를 위한 공장환경 개선 지원 	21백만 원 이내	기업부담 30%

※ 지원 한도액은 사업추진 상 변경될 수 있음

추진절차



문의처

-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 : ☎ 031-889-4762
-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http://pms.gtp.or.kr>)

III 창업 지원

14 경기(김포)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성장단계에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저렴한 업무 공간·공용시설 제공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 자금,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 견인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입주자격 : 창업 후 사업개시 3년 이상 10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 ▶ 창업일(사업개시일)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 입주제한 : 공해유발기업 등 집적시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제외

지원내용

- 벤처기업 입주공간 및 회의실, 휴게실 등
- 지원사업
 - ▶ 마케팅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바이어상담회 개최 등
 - ▶ 사업화 및 기술지원 : 투자상담회, 시제품/디자인개발 지원, 벤처기업 간 융복합 사업화 등
 - ▶ 경영지원 : 벤처기업 인증 지원, 벤처기업 일자리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지원절차



▶ 선정기준 : 창업자 자질, 기술성, 사업성, 지역경제기여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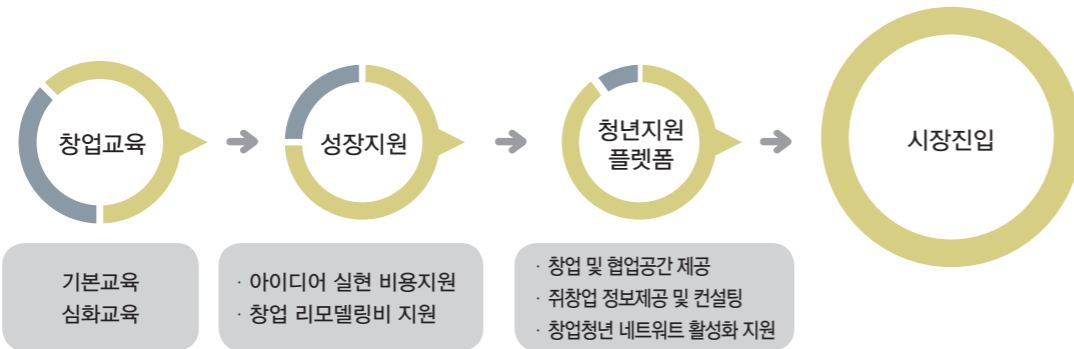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벤처기반팀 : ☎ 031-830-8590
- ※ 기업지원정보포털 : www.egbiz.or.kr

15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신규)

사업내용

- 청년 창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청년실업 위기 대응 및 지역정착 유도

지원내용



- 창업 역량강화 교육(김포청년 창업 아카데미)
 - ▶ 시 기 : 2019. 상반기 예정
 - ▶ 대 상 : 만 39세 이하 김포시 소재 (예비)창업자 40명
 - ▶ 지원내용 : 창업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기본·심화과정 운영
- 창업 성장지원(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_2유형)
 - ▶ 시 기 : 2019. 하반기
 - ▶ 대 상 : 만 39세 이하 김포시 소재 (예비)창업자 4팀
 - ▶ 지원내용 : 마케팅, 장비임차료 등 사업비 팀별 1,500천원 지원
- 창업지원 종합 플랫폼 조성(청년 취·창업 정보 지원 공간 內)
 - ▶ 조성기간 : 2019. 상반기
 - ▶ 장 소 : 김포시 사우동 상가건물 內
 - ▶ 지원내용 : 창업지원공간(코워킹 스페이스 등) 제공, 창업관련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 ☎ 031-980-2275

IV 마케팅 지원

16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통해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개요

- 파견규모 : 연 1 ~ 2회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 파견지역 및 신청기간 : 추후 공고
- 지원내용 : 임차료(상담장, 차량), 통역, 바이어, 항공료(일부)
- 파견업체 선정
 - ▶ 현지 시장성 평가 결과에 의거 경쟁력이 있는 우수기업 선정

문의처

- 김포시 기업지원과 : ☎031-980-2297
- 김포상공회의소 : ☎031-983-6655



17 G-FAIR KOREA 단체관 운영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우수상품 전시회인 「G-FAIR KOREA」에 김포시 단체관 운영 및 중소기업 참가 지원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지원개요

- 전시기간 : 2019. 10. 31.(목) ~ 11. 3.(일) / 4일간
- 신청기간 : '19. 4월 중
- 사업내용 : 김포시 우수 중소기업의 생산품 전시를 통한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 전시장소 : 킨텍스 제1전시장 1~3홀
- 지원대상 : 김포시 소재 우수 중소기업
- 지원규모 : 24개 부스 내외
- 위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전시회 주관사)

지원절차



문의처

- 김포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 031-980-2297
- ※ G-FAIR 홈페이지 : <http://www.gfair.or.kr>

18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신청기간 : 연 2회(상·하반기)
 - ▶ 상반기 : 2019. 1월 중
 - ▶ 하반기 : 2019. 6월 예정
- 사업내용

구 분	국내 전시회	해외 전시회
지원규모	20개 기업 내외	5개 기업 내외
지원한도	업체당 230만원	업체당 300만원
지원내용	기본부스 임차료의 100%, 시설구축비·홍보비의 60% 이내	
지원대상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김포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 계획인 기업 (1업체 1전시회)	

지원절차



문의처

- 김포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 031-980-2297

19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기반시설 개선사업

- 지원대상 :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 지원내용 :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보안등, 공동 안내 표지판, 우수관 정비, 공용 주차장, 보행로 정비, 교통신호등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김포시 소재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제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 세탁실 포함) 신축 및 개·보수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지원 제외), 근로자 통근버스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30백만 원 이내(기숙사 신축 60백만 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 총당)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10인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하향 조정(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설 설비 등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60백만 원 이내



작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김포시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제조업)
- 지원내용 : 작업 공간(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LED조명설치(작업공간만 해당) 자체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작업공간만 해당)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10인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하향 조정(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개소 당 30백만 원 이내

추진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중 익년도 사업접수(김포시청 홈페이지 게시)
※ 경기도 예산 반영에 따라 2018년 사업 추가접수 가능
- 선정절차



문의처

- 김포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 031-980-2284

20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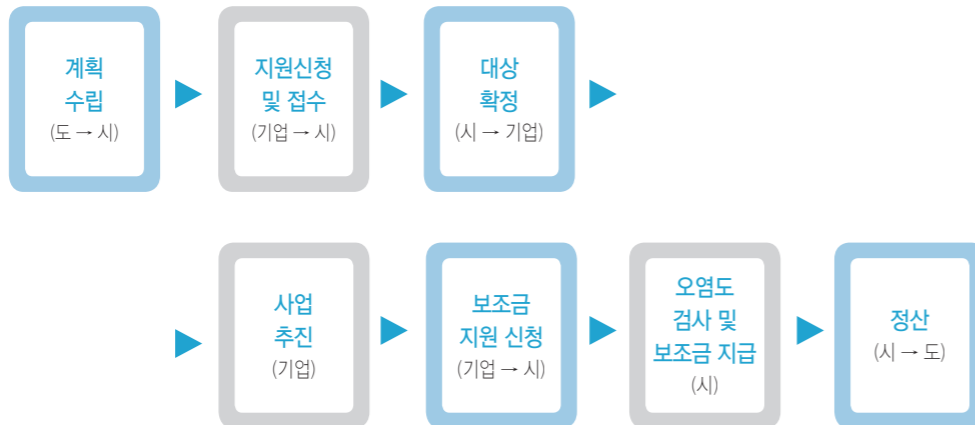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2019. 3월
- 사업대상 : 김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 1항에 따른 소기업 중 노후방지시설 교체 희망업체
- 사업비 : 227,500천원
- 보조금 분담 비용 :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
- 보조금 지원한도 : 최대 40,0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 지원

지원절차



문의처

○ 김포시 환경지도과 환경지도2팀 : ☎ 031-980-5672

21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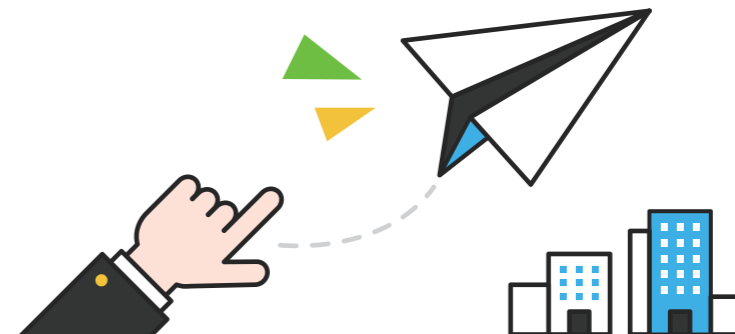
영세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유지관리 분야 지원 확대를 통해 만성적으로 부족한 단속인력 대체 및 지역 내 환경문제 해소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2019. 12월
- 사업대상 :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 4~5종 사업장
 - ▶ 종업원 50명 이하, 연매출 300억 원 이하 우선
 - ▶ 환경자격증(대기, 수질, 폐기물 등) 소지자 미 보유 사업장
 - ▶ 중점관리 사업장(민원다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 사업비 : 270,000천원
- 보조금 분담 비용 : 도비 30% 시비 64%, 자부담 6%
- 사업내용
 - ▶ 방지시설 관리 지원 : 6백만원 한도, 30개 업체
 - 포집(송풍)시설 등 방지시설 주기적 관리, 누락 배출원 조사 및 기술인 교육
 - ▶ 방지시설 유지보수 : 10백만원 한도, 9개 업체
 - 활성탄·충전물·여과포 교체(청소), 후드·덕트·송풍기 교체(수리), 본체 도장 등

문의처

○ 김포시 환경지도과 환경지도2팀 : ☎ 031-980-5672



22 기업 SOS 희망버스 운영

운영목적

- 기업 활동 중 발생하는 경영·금융·환경·기반시설 등의 애로 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기업애로 해소 추진

지원내용

- 운영 : 수시(기업 애로사항 접수 시 방문)
- 기업SOS 현장기동반
 - ▶ 김포시, 김포시 일자리센터, 김포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상공회의소 등
- 주요내용 : 기반시설 개선·금융·경영·기술 등 각종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책 제시

문의처

- 홈페이지 : www.giupsos.or.kr (기업SOS넷)
- 김포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 031-980-2284

23 김포시 공산품 전시장 운영

운영목적

- 김포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및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

사업내용

- 위치 : 김포시 공산품 전시장 1층 및 별관(김포시 감암로 125-2)
- 규모 : 제1전시장(32개 부스), 제2전시장(24개 부스)
- 운영시간 : 상시(09:00 ~ 18:00, 월~금)
- 모집업종 : 공산품(완제품기준) - 건설자재, 생활, 식품, 전자통신 등
- 임대평수 : 1부스 / 5평(공용면적포함)
- 입주금액 : 1,760,000원(부가세 포함)

운영목적

- 1차(서류접수) → 2차(서류심사/평가) → 3차(선정/발표) → 4차(입주계약/입주)

문의처

- 김포상공회의소 : ☎ 031-983-6655,6656 Fax. 031-984-6009, E-Mail : kimpo@korcham.net

24 김포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운영목적

-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에 대한 맞춤 상담 및 현장 컨설팅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

사업내용

- 운영 : 전문컨설턴트 1명 / 상시(09:00~18:00, 월~금)
- 주요내용 : 1:1 전문 상담, 경영 컨설팅, 모니터링 및 현장 실사를 통한 사전문제 분석, 경영진단, 입지분석, 사업활성화 전략, 홍보·마케팅, 판로 개척, 법률·회계·세무 상담, 경영개선 교육 및 성공업체 탐방 등 프로그램 지원 등

문의처

- 위치 :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2층 : 김포시 감암로 125-1
- 문의 : 김포시 소상공인지원센터 : 031-996-7850



VI 일자리 지원

2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개요

- 시행기간 : 2019년
- 지원대상
 - ▶ 30인 미만 사업장(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가능)
 - ▶ 300인 미만 사업장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장,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사업장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지원요건
 -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조건
 - ※ 제외 :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 단,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 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지원 가능(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주 40시간 기준)
- 지급방법 :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신청시기 : 연 1회(기존 지원받던 사업주는 자동 지원) [신청월 이후 매월 자동 지급]
- 신청방법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참고(<http://jobfunds.or.kr/>)
 - ▶ 온라인 : 사회보험3공단 EDI,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 오프라인 :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26 김포청년 채용디딤돌 사업



-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 우수 강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청년의 지역 정착 활성화를 통한 청년유입, 유출방지로 지역활력 제고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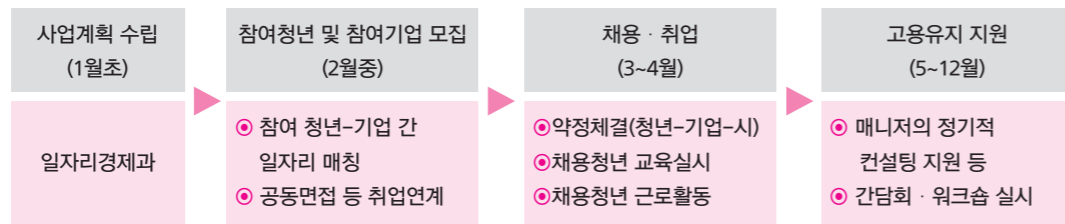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사업규모 : 50명('18년 기업연계지원 30명 + '19년 신규지원 20명)
※ 2018.9월부터 21개소 30명 지원 중
- 사업비 : 1,079,000천원(기업 자부담 포함)
- 사업내용
 - ▶ 관내 청년구직자와 사회적경제기업 및 강소기업 취업연계
 - ▶ 기본·역량강화 교육 후 근로활동 실시 및 인건비 지원
 - ▶ 간담회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청년간 연대감 형성 및 지역정착 유도

지원내용

- 지원기준
 - ▶ 참여청년 : 김포시 관내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 참여기업 : 우수 중소기업(강소기업),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월 200만원 이상의 업체에 2개월간 월160만원 인건비 등 지원

추진방법

- 추진절차 ('19 신규 채용)



문의처

-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 ☎ 031-980-2277

27 김포일자리센터 운영



김포일자리센터에서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게는 적합한 인재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연계하고,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김포를 만들고자 함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관내 구인업체 및 구직자 취업연계
- 지원내용



※ 채용행사 : 참여 원하는 업체 일자리센터로 사전 문의
- 구인구직 만남의 날(연 7회 운영), 취업박람회(3월, 6월, 10월 예정)

상담창구 운영

- 김포일자리센터 (☎ 031-996-7615~7618) : 김포고용복지+센터 4층
(위치 :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고용복지+센터 4층)
▶ 김포시 일자리경제과(980-2261) 및 각 읍면동별 취업상담사 배치
- 양촌산업단지 희망일자리통합지원센터 (☎ 031-999-6260)
(위치 :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메카존 나동 243호)
▶ 구인구직 취업상담 및 기업애로 사항 신청·접수 등

28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지원서비스



고용실적의 양적 성장을 넘어 고용유지를 통한 질적 성장을 위해 여성친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맞춤형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센터 소개

- 운영주체 : 김포시 직영 운영(여성가족부 · 고용노동부 공동지정)
- 센터조직 : 9명(공무원 2명, 취업상담사 5명, 직업상담사 2명)
- 사업내용
 -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십 지원
 - ▶ 채용기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여성채용기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

-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 ▶ 시 기 : 연중
 - ▶ 대 상 : 김포시 소재 사업장(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 지원내용
 - 새일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업지원 서비스
 - 여성친화기업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기업체 협력망 등
-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 ▶ 시 기 : 연중
 - ▶ 대 상 : 여성친화 일촌기업
 - ▶ 지원내용
 -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 탈의실, 수유실, 샤워실 등 환경 개선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새일여성인턴 지원

- ▶ 접수기간 : 매년 초 ~ 예산 소진시까지
- ▶ 대 상

구분	참여업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 4대보험 가입 업체 • 새일센터 협약업체 우선지원 -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업체 우선지원 • 인턴약정체결 이전 3개월 이내 권고사직이 없는 업체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 파견직, 영업성 근로자 연계 금지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사업체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 등

- ▶ 지원내용 :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인건비 지원(최대 240만원 지원)



○ 양성평등 인식개선 무료 기업특강

- ▶ 대 상 : 김포시 소재 사업장 대표, 중간 관리자 및 근로자 (여성친화 일촌기업 우선 지원)
- ▶ 지원내용 :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인식 개선에 필요한 강의 지원
- ▶ 주 제
 - 성희롱 예방, CS 직장예절과 소통, 갈등관리 및 조직이해
 - 직원 스트레스 관리 및 힐링 등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 맞춤형 인재 알선

- ▶ 시 기 : 연중
- ▶ 대 상 : 김포시 소재 사업장
- ▶ 지원내용 : 직무내용 · 근로조건 · 고용형태 등에 부합하는 맞춤형 여성인력 알선
- ▶ 이용방법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및 구인신청서 작성(방문, 팩스)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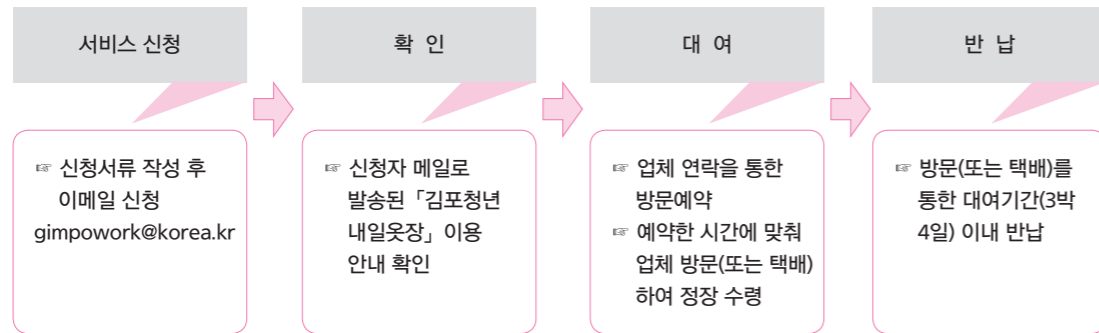
-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 ☎ 031-996-7607~7613
-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 ☎ 031-980-5577

29 김포청년 내일옷장(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34세 이하 청년구직자 및 고교졸업예정자
- 지원내용 : 면접용 정장 대여
- 지원범위 : 1인당 3회까지(대여기간 3박4일)
-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작성후 이메일(gimpowork@korea.kr) 신청

이용절차



문의처

-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 ☎ 031-980-2275



VII 중앙부처 사업

30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문의처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50
- 김포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31-999-0940-0942

사업 내용 :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고용 창출 장려 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단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table border="1"> <tr> <th>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th> <th>기업규모</th> <th>청년 신규채용</th> </tr> <tr> <td></td> <td>30인 미만</td> <td>1명 이상</td> </tr> <tr> <td></td> <td>30인~99인</td> <td>2명 이상</td> </tr> <tr> <td></td> <td>100인 이상</td> <td>3명 이상</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근로자(피보험자) 수 증가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신규 채용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최대 90명까지 지원)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대제 도입 확대, ② 실근로시간단축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인 미만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월 80~100만원, 1~3년 - (임금감소액보전) 월 10~40만원, 1~3년 ◆ 300인 이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월 60~80만원, 1~2년 - (임금감소액보전) 월 10~40만원, 1~2년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 제외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최저임금 110%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6개월 단위</th> <th>총 지원액</th> </tr> <tr> <td>우선지원 대상</td> <td>360만원</td> <td>720만원</td> </tr> <tr> <td>대규모</td> <td>180만원</td> <td>360만원</td> </tr> </table>	구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	180만원	360만원				
구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	180만원	360만원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 채용 ① 무기계약 ② 최저임금 110%(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③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원칙) ⑥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출퇴근 관리	◆ [인건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table border="1"> <tr><th>구분</th><th>1개월단위</th><th>총 지원액</th></tr> <tr><td>우선지원 대상</td><td>60만원</td><td>720만원</td></tr> <tr><td>중견기업</td><td>60만원</td><td>720만원</td></tr> <tr><td>대규모</td><td>30만원</td><td>360만원</td></tr> </table> * 직전년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 초과근로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출퇴근기록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은 장려금 지급 제외	구분	1개월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	6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구분	1개월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	6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3개월 이상 고용	◆ [인건비] 신규고용 1인당 <table border="1"> <tr><th>구분</th><th>3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 <tr><td>우선지원</td><td>240만원</td><td>960만원</td></tr> <tr><td>중견기업</td><td>120만원</td><td>480만원</td></tr> </table>	구분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구분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정규직 전환 지원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임금증가액] 전환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0만원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80%를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시간 선택 제 전환 지원	임금 감소 보전 · 간접 노무비	◆ [임금감소 보전금] <table border="1"> <tr><th>구분</th><th>1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 <tr><td>모든 기업</td><td>최대 40만원</td><td>480만원</td></tr> </table>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20만원(1개월 단위) ◆ 초과근로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출퇴근기록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은 장려금 지급 제외	구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모든 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구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모든 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대체 인력 지원금	위 요건을 만족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 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인건비] <table border="1"> <tr><th>구분</th><th>1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 <tr><td>우선지원</td><td>60만원</td><td>720만원</td></tr> <tr><td>대규모</td><td>30만원</td><td>360만원</td></tr> </table>	구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구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가 ①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거나, ②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인프라 구축	◆ [간접노무비] 주 3회 활용시 1주 10만원, 주 1~2회 활용시 1주 5만원을 1년간 지원 ◆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 ◆ [인프라구축비 용자] 총 투자비의 1/2 이내, 4,000만원 한도 *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우선지원대상 연 1%, 중견기업 연 2%)												

고 용 안 정 장 려 금 지 원	출 산 육 아 기 고 용 안 정 장 려 금 지 원	기간제 파견 근로자 재고용	임신, 출산전후 휴가 등 또는 육아휴직 중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당해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 우선지원기업대상 월 60만원 한도, 대규모기업 월3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육아 휴직 등 부여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간접노무비] <table border="1"> <tr><th>구분</th><th>지원대상</th><th>1개월 단위</th></tr> <tr><td>육아기</td><td>우선지원 대상</td><td>20만원</td></tr> <tr><td>근로시간 단축</td><td>대규모</td><td>10만원</td></tr> <tr><td>육아휴직</td><td>우선지원 대상</td><td>30만원</td></tr> </table> * 1호 인센티브 10만원	구분	지원대상	1개월 단위	육아기	우선지원 대상	20만원	근로시간 단축	대규모	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구분	지원대상	1개월 단위												
	육아기	우선지원 대상	20만원												
근로시간 단축	대규모	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대체 인력 지원	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②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③ 등 휴가·휴직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인건비] <table border="1"> <tr><th>구분</th><th>1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 <tr><td>우선지원 대상</td><td>60만원</td><td>720만원</td></tr> <tr><td>대규모</td><td>30만원</td><td>360만원</td></tr> </table>	구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구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대체인력 채용지원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 시 대체 인력 취업 및 기업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월 최대 60만원 한도)													
고용유지 지원금	◆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함에도 휴업,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 [고용유지 지원] <table border="1"> <tr><th>구분</th><th>지원수준</th></tr> <tr><td>휴업</td><td>휴업수당의 2/3(대규모 1/2)</td></tr> <tr><td>휴직</td><td>휴직수당의 2/3(대규모 1/2)</td></tr> </table>	구분	지원수준	휴업	휴업수당의 2/3(대규모 1/2)	휴직	휴직수당의 2/3(대규모 1/2)							
구분	지원수준														
휴업	휴업수당의 2/3(대규모 1/2)														
휴직	휴직수당의 2/3(대규모 1/2)														
임금피크제 지원금	◆ 정년 60세 이상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55세 이후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 이후 연간 소득이 7,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급 제외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된 금액을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지원 * 감액된 임금과 지원금의 합계가 7,250만원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함													
청년내일 채용공제	◆ [청년] 만 15세~34세(고용보험 생애최초 취득자 및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년형 청년내일채용공제] ◆ [청년] 2년간 300만원(월 12.5만원) 적립 ◆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원 ◆ [기업] 채용유지지원금(정부지원) 500만원 중 400만원 청년에 기여, 100만원 순지원금 혜택 → 2년 근속 시 청년 1,600만원 자산 형성 [3년형 청년내일채용공제] ◆ [청년] 3년간 600만원(월 16.5만원) 적립 ◆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원 지원 ◆ [기업] 채용유지지원금(정부지원) 750만원 중 600만원 청년에 기여, 150만원 순지원금 혜택 → 9년 근속 시 청년 3,000만원 자산 형성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 지원 * 신규지원자 - 5명 미만 사업 : 90%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 80% * 기 지원자 - 10명 미만 사업 : 40%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이상 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	◆ 기준 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연 96만원 한도 * 지원한도는 근로자 수의 10~20%													

- I 자금지원
- II 기술지원
- III 창업지원
- IV 마케팅지원
- V 기업SOS지원
- VI 일자리지원
- VII 중소기업컨설팅사업
- VIII 기타지원

31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사업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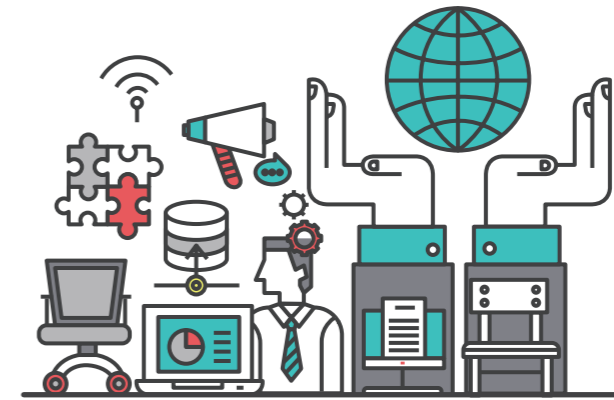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금융 지원	창업자금 지원	<p>◆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p> <p>- 혁신창업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지원</p> <p>[용자범위]</p> <p>◆ 시설자금</p> <p>-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시 소요자금</p> <p>-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p> <p>- 사업장 확보자금</p> <p>◆ 투자자금</p> <p>-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 외부 연구 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등</p> <p>◆ 운전자금</p> <p>-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p> <p>- 원부자재 구입 비용, 시장개척 비용 등</p> <p>[용자조건]</p> <p>◆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p> <p>◆ 대출한도</p> <p>- 기업당 60억원 이내</p> <p>- 운전자금 : 연간 5억원 ~ 10억원 이내</p> <p>-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20억원 이내</p>
	긴급경영안정자금	<p>◆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p> <p>*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p> <p>[용자범위]</p> <p>◆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p> <p>◆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p> <p>[용자조건]</p> <p>◆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p> <p>* 재해중소기업은 연 2.1% 고정금리 적용</p> <p>◆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p> <p>◆ 대출한도 : 연간 10억 원 이내</p>
	신용보증 자금	<p>◆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p> <p>* 지원 제외기업</p> <p>-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p> <p>-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휴업 중, 대출금 연체,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p> <p>[지원내용]</p> <p>◆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p> <p>*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 보증, 이행보증 등</p> <p>[보증한도]</p> <p>◆ 30억 원(신용 취약기업 등 : 15억 원 이내)</p> <p>◆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 ~ 100억원까지 보증 지원 가능</p> <p>☎ 신용보증기금 : 1588-6565</p>

금융지원	기술보증 기금	<p>◆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p> <p>*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p> <p>[지원내용]</p> <p>◆ 기술력 보유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신용보증</p> <p>-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무역금융보증, 전자상거래보증, 구매자금유보증</p>																					
	지역신용 보증재단	<p>◆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p> <p>[지원내용]</p> <p>◆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대출 보증</p> <p>◆ 보증한도 : 동일 기업당 최고 8억원 (신보 및 기보의 기 보증금액 포함)</p> <p>◆ 지원분야 : 운전자금, 시설자금</p>																					
기술개발 지원	창업성장 기술개발	<p>◆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p> <p>* 창업 후 7년 이하이며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p> <p>[지원내용]</p> <p>◆ (최대 2년, 5억 원 이내)</p>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th> <th>내역사업</th> <th>개발기간 및 지원한도</th> <th>정부 출연금 비율</th> <th>지원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창업기업 과제</td> <td>디딤돌</td> <td>최대 1년, 1.5억원</td> <td rowspan="3">80% 이내</td> <td>자유공모</td> </tr> <tr> <td>혁신형</td> <td>최대 2년, 4억원</td> <td>품목지정 (4IR분야)</td> </tr> <tr> <td>선도형</td> <td>최대 1년, 3억원</td> <td>지정공모 (혁신성장분야)</td> </tr> <tr> <td>기술창업 투자연계</td> <td>민간투자 주도형</td> <td>최대 2년, 5억원</td> <td></td> <td>자유공모</td> </tr> </tbody> </table>	사업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 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창업기업 과제	디딤돌	최대 1년, 1.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혁신형	최대 2년, 4억원	품목지정 (4IR분야)	선도형	최대 1년, 3억원	지정공모 (혁신성장분야)	기술창업 투자연계	민간투자 주도형	최대 2년, 5억원		자유공모
	사업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 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창업기업 과제	디딤돌	최대 1년, 1.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혁신형		최대 2년, 4억원	품목지정 (4IR분야)																				
선도형		최대 1년, 3억원	지정공모 (혁신성장분야)																				
기술창업 투자연계	민간투자 주도형	최대 2년, 5억원		자유공모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사업	<p>◆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p> <p>* 각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 신청 가능</p> <p>[지원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개발기간 및 지원한도</th> <th>정부 출연금</th> <th>지원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제품서비스화</td> <td>최대 1년, 2억원</td> <td rowspan="3">65% 이내</td> <td rowspan="3">자유공모</td> </tr> <tr> <td>신규서비스창출</td> <td>최대 1년, 1.5억원</td> </tr> <tr> <td>업종공통서비스</td> <td>최대 1년, 2억원</td> </tr> </tbody> </table>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 출연금	지원 방식	제품서비스화	최대 1년, 2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신규서비스창출	최대 1년, 1.5억원	업종공통서비스	최대 1년, 2억원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 출연금	지원 방식																				
제품서비스화	최대 1년, 2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신규서비스창출	최대 1년, 1.5억원																						
업종공통서비스	최대 1년, 2억원																						
산학연 Collabo R&D	<p>◆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 보유 중소기업이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p> <p>◆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p> <p>[지원내용 및 지원한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개발기간 및 지원한도</th> <th>정부 출연금</th> <th>지원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산학협력</td> <td>예비연구</td> <td>8개월, 0.5억원</td> <td rowspan="4">75% 이내</td> <td rowspan="4">자유 공모</td> </tr> <tr> <td>사업화 기술개발</td> <td>2년, 4억원</td> </tr> <tr> <td rowspan="2">산역협력</td> <td>예비연구</td> <td>8개월, 0.5억원</td> </tr> <tr> <td>사업화 기술개발</td> <td>2년, 4억원</td> </tr> </tbody> </table>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 출연금	지원 방식	산학협력	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75% 이내	자유 공모	사업화 기술개발	2년, 4억원	산역협력	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사업화 기술개발	2년, 4억원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 출연금	지원 방식																				
산학협력	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75% 이내	자유 공모																			
	사업화 기술개발	2년, 4억원																					
산역협력	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사업화 기술개발	2년, 4억원																					
연구기반 활용	<p>◆ (참여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p> <p>◆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 시설·장비를 ZEUS에 등록된 대학·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p> <p>[지원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업구분</th> <th>정부 출연금</th> <th>기업 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공유 확산형</td> <td>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td> <td>70% 이내 (최대 5백만원)</td> <td>30%이상</td> </tr> <tr> <td>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td> <td>60% 이내 (최대 5백만원)</td> <td>40%이상</td> </tr> <tr> <td rowspan="2">연구 집중형</td> <td>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td> <td>70% 이내 (최대 5백만원)</td> <td>30%이상</td> </tr> <tr> <td>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td> <td>60% 이내 (최대 5백만원)</td> <td>40%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기업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공유 확산형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이내 (최대 5백만원)	30%이상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60% 이내 (최대 5백만원)	40%이상	연구 집중형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이내 (최대 5백만원)	30%이상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60% 이내 (최대 5백만원)	40%이상				
구분	기업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공유 확산형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이내 (최대 5백만원)	30%이상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60% 이내 (최대 5백만원)	40%이상																				
연구 집중형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이내 (최대 5백만원)	30%이상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60% 이내 (최대 5백만원)	40%이상																				

I 자금 지원
II 기술 지원
III 창업 지원
IV 마케팅 지원
V 기업 S O S 지원
VI 일자리 지원
VII 중소기업 관련 사업
VIII 기타 지원

마케팅 홍보지원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성,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선택형 바우처 사업으로서, 참여기업의 희망에 의한 마케팅 지원 - 빅데이터 분석 · 활용 지원 - 마케팅 전략 수립 - 제품개선, 브랜드개발 지원, 매체홍보
	온라인 시장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 제조 · 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제품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건강보조/기능식품 산업제, 원부자재류, 부품 등 제외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판매관리지원 : 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통합 판매관리기능 제공 ◆ 온라인쇼핑몰기획전 : 온라인쇼핑몰 베너기획전 운영 ◆ TV홈쇼핑 방송지원 : 우수제품 방송 판매 지원 ◆ V커머스 홍보판매 : V커머스 채널을 통한 인터넷 동영상 판매, 온라인채널 연계 홍보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공장에서 일반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 A/S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등 일회성 · 소모성 생활 소비재 제외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고객센터를 통해 제품 사용법 · 고장 · 교환 · 반품 등 각종 고객민원 통합 대응 및 관리 ◆ 기업현황에 따른 맞춤형 A/S INSIGHT 제공 ◆ A/S 대행사를 통해 제품 수리 · 교환 · 반품에 대한 A/S 처리 지원 등
수출 지원	수출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개발, 외국어 포장 디자인, 홍보 · 광고, 전시회, 인증 등 해외 마케팅 서비스 지원 * 서비스 비용의 최대 70% 지원 <p>[지원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개발 :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 ◆ 홍보동영상 :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통번역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 콘텐츠, 비즈니스 / 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 해외규격인증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해외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 규격인증 분야 지원 ◆ 특허, 지재권, 시험 : 현지 시험 · 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 · 인증 · 시험 · 수출IP전략 컨설팅 등 ◆ 브랜드 개발 · 관리 : 수출브랜드, CI 및 BI개발, 네이밍, 브랜드 정품 인증 등
	수출 컨소시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수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이 일부 지원 ◆ 지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준비(현지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 70~90% - 현지파견(상담장 입차, 장치, 차량 등) : 50~90% - 사후관리(바이어 국내 초청, 업체 방문) : 70~90%

전자상거래활용 수출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상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 스타기업 육성 ◆ 온라인수출 기업화 ◆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 온라인 전시회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사업 신청 및 접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CFDA, NRTL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지원 - 기업당 1억원 한도, 총 인증획득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차</th> <th>2차</th> <th>3차</th> </tr> </thead> <tbody> <tr> <td>접수</td> <td>2월</td> <td>6월</td> <td>9월</td> </tr> </tbody> </table> <p>[신청 ·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참조 	구분	1차	2차	3차	접수	2월	6월	9월
	구분	1차	2차	3차						
접수	2월	6월	9월							
◆ 제조업(전업률 30%),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 운영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 인터넷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 · 회계컨설턴트의 컨설팅 - 현지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수출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접수 									



32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

시상개요

- 선정업체 : 5개 분야, 7개 기업
- 선정분야 : 창업, 생산성향상 및 기술혁신, 해외개척, 여성기업,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 추진계획
 - ▶ 2019. 8 ~ 9월 : 공고 및 접수
 - ▶ 2019. 10월 :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 ▶ 2019. 11월 :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상업체 선정
 - ▶ 2019. 12월 :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
- 훈격 : 김포시장(상장 및 상패)

※ 수상기업 혜택 : 중소기업 운전자금 0.5% 추가보전, 중소기업 지원 시책 신청 시 가점 부여

신청대상

- 사업장(공장)이 김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만 3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단, 창업 및 여성기업 분야는 1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
- 김포시 중소기업 대상 수상업체 중 5년 이상 경과된 업체

문의처

- 김포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 031-980-2285



33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내용

-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사·용역·물품 입찰 정보 무상 제공
- 입찰정보 관련 전용홈페이지 구축 및 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관내 기업의 사업분야에 맞는 모든 입찰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운영교육

- 전문가를 통한 입찰 교육 실시(상·하반기)
- 입찰관련 전문가 상담서비스 제공(☎ 1644-9927)
- 분석 데이터 제공(사정률 분석, 예가산출 프로그램)
- 김포시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서비스 : <http://biz.gimpo.go.kr/>

등록절차

- 홈페이지(<http://biz.gimpo.go.kr/>)에서 회원가입
- 관리자 (fax 02-850-3566)에게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
→ 관리자 승인 후 가입완료

문의처

- 김포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 031-980-2285
-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팀 : ☎ 1644-9927



34 온라인 기업지원 안내

○ 온라인 기업지원 안내

▶ 김포시청 홈페이지 (www.gimpo.go.kr)



35 기업지원 유관기관(관련) 사이트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경기신용보증재단	http://www.gcgf.or.kr/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http://www.gbsa.or.kr/
경기테크노파크	http://www.gtp.or.kr/
SBC중소기업진흥공단	http://hp.sbc.or.kr/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mss.go.kr/
기업 SOS넷	http://giupsos.or.kr/
김포시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서비스	http://biz.gimpo.go.kr/
김포상공회의소	http://kimpocci.korcham.net/

36 공장설립 개요

공장의 개념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

▶ 공장의 범위(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부지내 설치하는 부대시설
-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부지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으로 중분류 10... ~ 33... (통계법 제22조)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업종구분	중분류	대분류	업종구분	중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K	금융 및 보험업	64~66
B	광업	05~08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69
C	제조업	10~3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D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35~36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74~75
E	하수, 폐기물, 원료재생 등	37~39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복장 행정	84
F	건설업	41~42	P	교육서비스업	85
G	도매 및 소매업	45~4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H	운수업	49~52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S	협회, 단체, 수리, 기타개인서비스	94~96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등	58~63	T	고용활동,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 | | |
|-----------------------------|----------------------------------|
| 10. 식료품 제조업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11. 음료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12. 담배 제조업 | 24. 1차금속 제조업 |
| 13. 섬유제품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
|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품 제조업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28. 전기장비 제조업 |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19.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32. 가구 제조업 |
| 2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 부대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시설
 ☞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기숙사 등(시행규칙 제2조)

공장설립 신청의 종류

-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을 신설, 증설, 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또는 창업사업계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신설승인 (법 제2조21호)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의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으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승인 (법 제2조21호)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아니함
이전승인 (법 제25조3항)	-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이전 촉진 지원(법 제26조) ※ 김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일반적인 이전은 지방중심으로 기존공장등록 취소 후 새로운 지번에 신규 등록
업종변경승인 (법 제18조의2)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치승인 (법 제14조의3)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아래의 공장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 미리 업종을 정하지 않고 법 제13조1항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건축물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건축물
창업사업계획 (중장법 제2조)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자란 중소기업에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도 허가, 신고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 변경: 승인(신설, 증설, 업종변경) 받은 사항 중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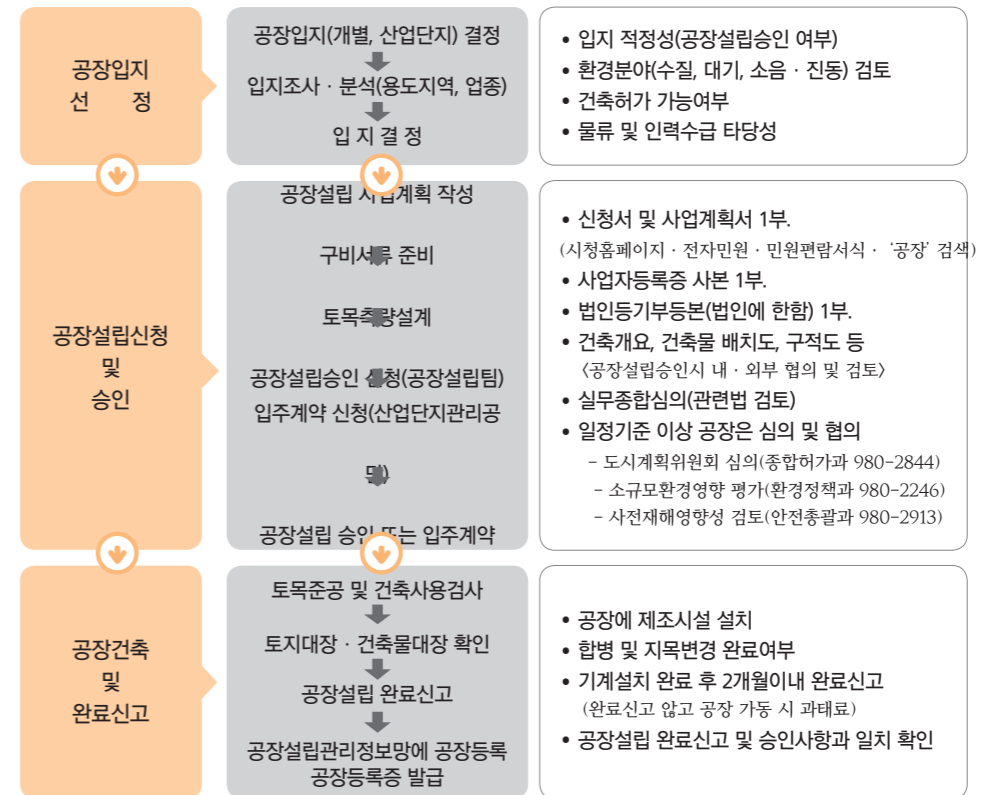
변경승인 (시행규칙 제7조)	- 공장부지면적 20%이상 증가(승인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공장면적용의 적합한 범위 안에서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 공장건축면적 20%이상 증가(기준공장면적용의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감소는 제외)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용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제외) ※ 완료신고 후에는 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 1㎡ 증가해도 증설승인 대상 ※ 승인상태에서 소유주가 바뀌면 변경승인 대상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7조의2)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 법인이 요청 시) - 세부업종 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변경) ※ 세부업종 변경도 제한업종 확인, 생산품, 생산시설, 공정이 업종과 맞는지 확인!

※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설립하거나 승인사항을 변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52조)

○ 완료신고, 공장등록, 부분등록

완료신고 (법제15조제1항)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 설치하면 부담금 납부, 배출시설설치신고 등 이행 후 2개월 이내에 완료신고 ※ 완료신고를 하지 않고 공장 가동 시 1차~3차 과태료 처분 및 승인 취소 대상
공장등록 (법제16조제2항)	공장설립승인 대상 이외(500㎡미만)의 공장 소유자, 점유자도 공장등록증명서 등 필요성에 따라 공장등록 신청
등록변경 (법제16조제2항)	등록된 사항 중 일정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 소유자, 회사명, 대표자, 부지면적감소, 건축면적감소, 부대시설, 세부업종 등 변경 -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의 업종변경 및 공장의 증설

처리절차



문의처

- 김포시 기업지원과 (대곶 송마/쇄암/석정) ☎ 980-2895, (하성, 월곶) ☎ 980-2894, (양촌, 고촌 통진 웅정리, 동지역) ☎ 980-2896, (통진 웅정 외 지역) ☎ 980-2897, (대곶 송마/쇄암/석정 외 지역) ☎ 980-2898
- 산업단지(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 ☎ 996-0788

37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신청 안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제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에게 창업일로부터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 부담)을 면제하는 제도

지원개요

- 면제대상 : 2007.8.3 ~ 2022.8.2 기간 중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
 - 감면기간 : 창업일로부터 3년간
 -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필수 조건
 - ①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②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C)**에 속하는 기업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등기일
 - 개인사업자 : 사업개시일(사업계획승인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일)

창업기업 감면대상의 범위

-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되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분사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세분류 기준) ←
 -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과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 김포시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공장(불법공장 및 부실기업 배제)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업종분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 | | | | |
|---|-----------------|---------------|-----------|
| 1. 금융 및 보험업 | 2. 부동산업 | 3. 숙박 및 음식점업 | 4. 무도장운영업 |
|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6. 기타 게임링 및 베팅업 |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제출서류

1.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면제신청서 1부.(중창법 시행규칙 별지9호서식)
2. 사실증명 ☞ 김포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 「증명 받고자하는 내용」 란에 다음 내용으로 표기되도록 발급신청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 △△기업(사업자번호/00년0월0일 개업),
▽▽산업(사업자번호/00년0월0일 폐업) 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2-1. 사업자등록증명 ☞ 김포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과거 등록사항(소재지, 업태, 종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자 순으로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증명'을 추가로 제출
- 2-2. 폐업사실증명 ☞ 김포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 ▽▽산업의 폐업사실증명 - 폐업한 사업자 전부 제출

3. (대표자 개인)국세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각1부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별로 각각 첨부.

4. 그 밖에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공장등록증 1부. (공장설립온라인시스템에서 자체확인 가능함)
-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제출)
- ☞ 업종추가 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확인 : 결산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1부.
(업종이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문의처

- 감면대상 확인

- 대곶 송마 / 쇠암 / 석정 : ☎ 980-2895,
- 하성, 월곶 : ☎ 980-2894,
- 양촌, 고촌 통진 옹정리, 동지역 : ☎ 980-2896,
- 통진 옹정 외 지역) : ☎ 980-2897
- 대곶 송마 / 쇠암 / 석정 외 지역 : ☎ 980-2898

- 부담금 감면 확인

- 한국전력공사 김포지사 : ☎980-7351
- 국번없이 : ☎123

38 공장건축 총 허용량 제도 안내

공장총량 개념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고자 공장건축을 총량으로 제한(1994년 시행)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월 ~ 12월
- 2019년 김포시 배정량 : 약 8만㎡ 배정
 - ☞ 국토교통부에서 3년 단위로 경기도에 배정, 경기도에서 1년 단위로 시군에 배정
- 사업내용 : 배정물량 조기 소진 방지를 위해 상반기 4만㎡, 하반기 4만㎡ 분할 집행
 - ※ 배정 물량 90% 소진 시 신규접수 불가, 잔여물량 오래된 민원 집행
 - ※ 난개발 개선 및 미세먼저 저감을 위해 매년 배정물량 감소 집행 예정
- 근거법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국토교통부, '18.4월)

운영지침

- 적용대상 : 연면적 · 500㎡ 이상인 공장
 - ※ 연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 집행시점 : 공장총량은 건축허가(신고)의 시점에서 집행하되, 배정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 공장건축 허가 등을 하여야 함
- 집행기준 : 건축법에 의한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허가 · 신고,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신청 면적
- 적용제외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제2종근생(제조업소), 연면적 500㎡ 미만은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문의처

- 기업지원과 공장설립팀 : ☎ 980-2894

39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김포시 지역화폐 개념

-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력도모 및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들고자 김포시에서 발행하고, 김포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사업개요

- 발행시기 : 2019년 4월 중
- 발행규모 : 약 110억 원(시 지급수당 60억, 일반 구매 50억)
- 발행방법 : 카드형(기명식 선불카드)과 모바일형(간편결제) 병행 발행
- 사용방법
 - ▶ 카 드 : 기존 카드 형태로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상점에서 사용 가능
 - ▶ 모바일 : 간편결제(QR결제 등) 방식으로 가맹점으로 가입된 업체에서 사용 가능
 - ※ 취지상 대형마트(SSM포함), 백화점, 대규모 아울렛, 유흥업소, 복권 ·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

사용혜택

- 소비자 : 할인 구입(6%할인), 현금영수증 발행 및 소득공제(30%)
- 가맹점 :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신규 고객층 증가로 매출 증대 및 가게 홍보효과

구입방법

- 2019년 4월 이후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김포시 지역화폐 앱” 설치 또는 유선 등 카드발급 후 사용 가능²⁾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 980-2558

2) 모바일 앱에 카드 신청 및 간편결제 기능 탑재, 운영대행 카드사 등을 통해 지역화폐 카드만 별도 신청 가능토록 추진예정

2019년 김포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행일 : 2019년 1월

발행처 : 김포시 기업지원과